

제5장

사업체모집단 보안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 연구

정미옥

제1절 서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기업의 보안의식 강화로 통계조사를 기피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수행했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자료의 품질저하, 조사의 누락·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산업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정시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EU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통계 선진국에서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응답부담을 경감하려는 노력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들은 기업 및 사업체에 통계조사에 응답해 주길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부분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통계조사로 사업체가 느끼는 응답부담은 크다. 통계조사의 수행과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정확한 사업체명부의 구축 및 공동 활용은 필수적이지만,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 관리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연계시킬 수가 없어 사업체의 생멸통계작성이나 패널구축과 같은 다양한 통계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에 대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체모집단이 사업체 기본정보를 관리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에 명부를 제공해 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통계조사 외의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적 방안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사업체모집단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체의 고유번호인 사업자등록제¹⁾가 시행되고 있다. 다른 행정자료나 통계조사와의 연계(matching)작업을 위해 사업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필요한데,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한 사업체가 세금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둘째,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각 행정기관의 시스템이 변화하였다. 기관마다 행정자료에 대한 DB화가 진행 중이고, 기관별로 관리하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공공·금융기관간의 범정부적 정보공유를 위해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를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유범위 확대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에 따른 정보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안 및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시의성 있고 정확한 사업체모집단을 갖추기 위해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선결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체모집단에 행정자료의 활용을 지원·적용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사업체 기본정보와 관련이 있는 행정자료의 특성을 검토하여 그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사업체모집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현재 상황,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사업체모집단에 활용 가능한 각종 행정자료들의 유용성을 제4절에서 확인해 보며, 제5절에서는 사업체모집단 구축을 위한 주요 자료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국민연금 자료를 자세히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와 사업체모집단 보안을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사업체모집단 현황

1. 사업체통합관리 시스템

통계청에서는 2000년부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관련 통계조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체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사업체통계조사의 명부를 비롯한 개별 사업체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업관련 통계조사간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개별 통계조사의 조회검색, 오류검증,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하기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통합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DB의 내용 및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사업체통합관리시스템 구성

분류	대상	내용	기능
모집단 DB	사업체모집단DB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사업체 검색, 표본추출, 집계표 작성, 사업체 연계
	기업체모집단DB	기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기업체 검색, 기업체 산하 사업체 조회, 본지사 연계
통계조사 DB	사업체기초통계DB	통계조사별 조사항목 전체	사업체 검색, 사업체 내용 수정(일괄), 내검, 집계 및 분석, 통계표 작성
	광업제조업통계DB		
	도소매업서비스업 통계DB		
	서비스업총조사DB		
	운수업통계DB		
	기업활동실태통계DB		
행정자료 DB	근로복지공단 ¹⁾ , 금융감독원 ²⁾	통계조사 관련항목	기업체 및 사업체 검색

주: 1) 근로복지공단 약 82만 개 사업체(약 26만 개 회사법인 포함).

2) 금융감독원 기업체 11,142개 재무제표.

사업체모집단DB는 정확한 모집단 구축을 위해 통계조사DB와 행정자료DB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운영하고자 설계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통계조사DB만을 대상으로 구축되고 있다. 행정자료DB는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구축되었으나 검색용도였을 뿐, 직접적인 통계표 작성이나 통계조사 자료와의 연계 등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 및 갱신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검색 용도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사업체모집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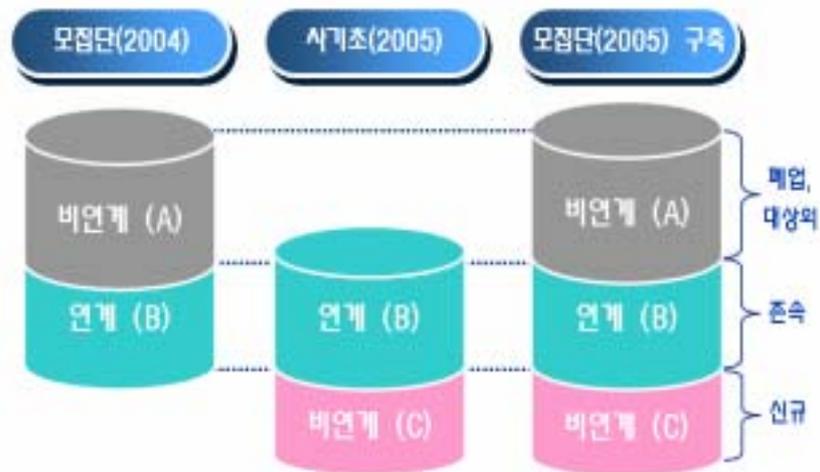
사업체모집단은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통계조사용 명부 및 표본 추출틀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통계조사별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방지와 점검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사업체모집단은 1999년도 기준부

터 구축되었는데, 사업체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변동, 조직형태, 사업종류,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과 같은 사업체의 기본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1999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1999년 기준 사업체모집단을 구축하였으며, 사업체고유번호를 임의로 생성하여 부여하였다. 그 후 2000년도 기준 모집단부터는 전년도에 구축되어 있는 사업체모집단과 기준년도 통계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사업체고유번호를 연계해줌으로써 기준년도 모집단을 구축하였고, 2005년 기준 모집단에는 총 7,526,302개 사업체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모집단과 비교하기 위해 활용된 통계조사 자료로는 초기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만을 사용했으나, 점차 자료의 범위를 넓혀 현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기업체모집단 등이 활용되고 있다.

고유번호는 총 10자리로 시도코드 2자리, 연도코드 2자리, 그리고 일련번호 6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번호는 우선 모집단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체와 통계조사 사업체가 일치하는 경우엔 모집단에서 관리하고 있던 고유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일치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모집단에 존재하되 통계조사에 발견되지 않는 사업체는 모집단변동코드를 폐업으로 분류해 주며, 모집단에서 발견되지 않고 통계조사에 존재하는 사업체는 모집단변동코드를 신규 혹은 누락신규로 분류하고, 신규 고유번호를 생성해 주게 된다.

사업체 연계는 사업체모집단 DB의 연계시스템에서 대조테이블을 이용하여 수행되고, 연계작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고유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합하여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전산연계하고, 중복사업체만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이때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의 연계율은 약 60%이며, 연계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 정도이다. 2단계는 입력 등의 오류로 인한 비연계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1단계보다 넓은 범위의 조건으로 연계를 실시하는데, 이때 약 10%가 연계되며 연계소요시간은 약 10일 정도이다. 나머지 사업체에 대해서는 종사자, 매출액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약 2~3개월에 걸쳐 전화질의에 의한 연계작업이 수행된다. 고유번호

[그림 5-1] 사업체모집단 구축 방식



연계시 동일사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비교해 주는데, 연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우마다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통계조사의 특성에 따라 7~8단계까지 수행되며, 통계조사마다 조사시기와 자료 접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표 5-2>와 같이 연계시기를 정하고 있다. 연계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통계조사의 결과로 사업체모집단 기본항목에 대한 내용 갱신이 이루어지며, 개별 통계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까지 변경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갱신된다.

<표 5-2> 통계조사별 연계시기

통계조사명	조사시기	접수시점	확정시기
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월	5월	11월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	5월	7월	12월
3. 도소매업통계	6월	8월	12월
4. 서비스업통계	6월	8월	12월

3. 문제점

사업체모집단은 통계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여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 통계조사 자료의 한계점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 응답부실, 착오조사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조사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모집단에 수록될 수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후조사결과인 <표 5-3>을 보면 2005년의 경우 누락률이 2.5%, 중복률이 0.4%로 나타났으며, 조사항목별 부합률은 산업분류가 94.8%, 종사자 수합계가 98.8%, 매출액이 92.1%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체 고유번호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key) 변수인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그 정확도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표 5-3>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후조사 결과 및 항목별 부합률
(단위: 사업체, %)

사업체수							오차율				
총조사 (a)	사후 조사 (b)					증감 (b-a)	누락률 (d/b)	중복률 (e/b)	총오 차율 (d+e)/b	순누 락률 (b-a)/b	완전율 (a/b)
		비이동 (c)	누락 (d)	중복 (e)	전입 폐업 (f)						
22,987	23,496	22,223	599	90	674	509	2.5	0.4	2.9	2.1	97.8

(단위: %)

대표자명	창설연도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산업 분류	상용 종사자수	종사자수 합계	매출액
96.8	96.1	93.0	99.2	99.5	94.8	99.5	98.8	92.1

둘째, 통계조사의 조사시점에 대한 문제이다. 통계조사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시점에 존재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과거 대상기간 동안의 사업체 정보를 조사하게 되므로 조사결과에는 기본적으로 시차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통계조사가 수행되고 나면 익년 통계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변동사항들이 갱신되지 못하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기간 동안 생겼다 사라진 사업체의

정보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1년 동안 매우 많은 사업체가 탄생·소멸하는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880,716개의 업체가 신규로 등록을 하였고, 795,755개의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했을 때 사업체모집단이 정확한 모집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변동에 대해서도 시의성 있게 반영해줌으로써 모집단을 이용하는 통계조사들이 명부보완작업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집단 고유번호 연계를 위해 전산연계가 되지 않은 사업체에 직접 확인전화를 함으로써 모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응답자에게 응답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수시로 변동사항이 체크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조사 자료가 접수되는 시점에 고유번호연계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이다.

넷째, 고유번호 연계시 연계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고유번호 연계를 위해 7-8단계의 확인 작업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은 사업체를 폐업사업체 혹은 신규사업체로 판단함으로써 실제와 다르게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면, 현 시스템에서는 기존 모집단에 존재하고, 통계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업체는 모집단 변동코드를 폐업으로 분류시키는 체계이다. 이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체가 폐업이 되어서 통계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통계조사에서 누락됐을 가능성과 통계조사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계과정에서 탐지해 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업체모집단 내용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연계기준을 좀 더 체계화하며, 신규 사업체의 설립이나 폐업사항이 발생과 동시에 수록되지 않는 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사업체모집단은 통계조사 자료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정·관리는 되고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많은 부분을 제한적으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행정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다(김영수, 2006). 따라서 우리는 통계조사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정자료들을 이용하여 사업체모집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제3절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1. 행정자료 개요

가. 정의

행정자료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 협의개념(조세, 보조금, 인구 관련 정부자료)에서 정부기능의 민간이양에 따라 민간분야의 자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OECD 정의에 따르면, 행정자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²⁾. 첫째, 통계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과 그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르다. 이는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통계조사시 통계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행정자료 보유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자기의 정보가 아닌,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는 원천적으로 통계목적이 아니라, 그 단위를 처리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통계적 목적으로 수집된다. 셋째,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을 완벽하게 포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 행정자료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방법에 대한 감독은 그 행정기관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적 규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된다.

나. 행정자료 활용 방법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전략이 필요한데, 첫째 단계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이 야기할 개인 및 기업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같은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2) OECD Homepage -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7_36239186_1_1_1_1,00.html.

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통계법에 근거하여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제화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법 규정이 마련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협력적인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입수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자료 시스템에 통계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행정자료와 통계조사 사이에 정의나 기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들 간 차이 조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후에 자료 설계나 구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속단계로서 새로운 행정시스템 도입시 시스템 구축과정에 통계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구축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단기에 통계활용을 위해서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한 후 행정자료가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등록부(register)를 구축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청들은 사업체 등록부 내지는 사업체모집단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런 등록부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표본추출틀, 무응답 조정·대체(imputation)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많은 경우 행정자료는 표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모집단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행정자료 모집단을 활용하여 무응답을 조정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표본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료를 대입(substitution)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행정자료 활용의 장점 중의 하나는 자료 대입을 통하여 통계작성시 행정자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사업체 등 특정한 통계적 단위 그룹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대신에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그룹의 내용을 채울 수 있다. 네 번째는 자료 연계(matching)이다. 행정자료를 통계조사 자료와 연계시킴으로써 두 자료의 품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고, 종적(longitudinal) 혹은 패널(panel) 자료를 구축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품질, 시의성과 포괄범위(coverage)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단기 경제통계(short-term economic statistics) 분야에서의 행정자료는 응답부담의 감소, 완전한 포괄범위, 비용절감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행정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계조사와 행정자료 간 차이에 대해 요약해 놓은 다음의 <표 5-4>를 보면, 행정자료는 행정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행정 편의 위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

<표 5-4>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 간 비교

자료 요소	총조사(Census)	표본조사(Survey)	행정자료
포괄범위	모집단 전체 대상	모집단 일부 제외	목표 모집단은 행정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
내용	광범위한 자료	좁지만 깊은 주제	행정목적에 필요한 제한적 변수
개념/정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에 기초	좌동	행정적 필요성에 따름
소지역 추정	가능	대부분 불가능	개별 자료가 소지역까지 부호화 되었을 경우
품질관리	오차 최소화 설계 가능	소규모라 센서스보다 밀착 관리 가능	주요변수 외는 관리소홀
비용	고비용	조사당 비용 상대적 저렴함	초기비용 행정 프로그램 귀속시 상대적 저렴함
주기	5~10년	월간, 분기 또는 연간	월간 또는 연간 (행정프로그램에 좌우)
시의성	센서스 6월 또는 2년 6월 후 자료사용 가능	정기조사는 몇 주, 임시조사는 몇 달 내 결과 산출	연간자료는 차년도 이후에 활용 가능
안정성	이용자 요구에 따라 통계청이 변화요인 관리	시계열 확보를 위해 반복되는 조사의 변동은 드물	법·제도나 행정관행 변화시 변동 가능
응답부담	크나 잦지 않음	대상자에게는 크나 평균적으로는 적음	추가 부담 없음

에 자료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편, 응답부담과 비용감소 측면에서는 통계조사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자료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각 자료의 특징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환경의 변화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잘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늘어나고 품질은 향상될 것이며, 응답부담 감소 및 예산의 절감 등 실리적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정자료를 즉시 활용하기까지 많은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행정자료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법적 여건 등 제도적 기반 취약,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과 같은 도의적·물리적 보안상의 문제, 부처 이기주의로 표현되는 조직문화와 정보의 권력적 수단화 문제, 사회적 공감대 부족, 행정자료 활용 조기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자료의 품질 및 표준화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처해 있던 환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들, 그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환경들을 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통계청은 통계법 제7조(통계작성 목적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행정자료 제공기관과의 법 적용 우선순위 경합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의 비실명자료는 제공하고 있지만, 실명자료에 대해서는 납세자와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국세기본법 81조 10항(비밀유지)에 의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자체 개별정보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별정보보호 조항이 없는 자료보유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내세우며 제공을 꺼려 왔다.

법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이 어려워지자 통

계청에서는 행정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통계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통계법 제24조에는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였고, 제공된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 통계법이 2007년 10월 시행됨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자료 활용 협의가 어느 정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된 통계법 제24조 2항³⁾을 근거로 국세청에서는 여전히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계법상 별도의 근거규정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규정과는 달리 어떤 행정자료를 제공받을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거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 통계법은 기존에 구축된 행정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기적 성격이 강하며, 향후 행정자료의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포괄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령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통계청의 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통계청장의 자문위원회 성격에 지나지 않았던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시켰다. 국가통계위원회가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과 보급, 이용 등과 관련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이나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 기관에서 국가통계위원회에 당연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련 부처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정부는 전자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과 정보화의 결합을 통해 사회여건에 행정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3)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던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형식의 지방세 자료를 일일이 수집해서 취합해야 했다면, 이제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양식의 자료를 일괄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일상 행정업무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자료와 관련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과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인해 행정자료 활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응답부담 감소 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얻고, 이에 대한 당위성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런 실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철저한 비밀보호, 보안상 안정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다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자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계조사 자료와의 정의 및 기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 문제의 해결, 지속적인 정보 갱신 방법과 관리방안 제시, 비밀보호와 관련된 기술적인 통제장치 마련, 자료 발굴-입수-분석-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장치 강구, 실무자들 간의 상시 협의체 구축,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행정자료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을 저해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행정자료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대외적 활동과 실무적인 활용을 활성화하는 조직 내부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 해외사례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

으며, 1997년 Eurostat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모집단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이다.

가. 캐나다⁴⁾

최근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연간, 월간 사업체 통계조사에 과세자료의 활용을 확대하였다. 이는 정시성과 과세자료의 품질향상, 그리고 과세자료를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감소시키고 통계조사에서의 자료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1) 활용자료

캐나다에서는 과세자료와 통계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업체명부(BR: Business Register)를 구축하였고, 이를 경제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체명부의 역할은 캐나다 통계청에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등과 같은 사업체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명부를 제공하는 데 있다.

사업체명부 구축은 종사자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사업체와 종사자가 있는 비법인사업체, 그리고 GST(Goods and Services Tax) \$30K 이상의 무종사자 비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체명부의 주요 정보로 CCRA(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로부터 입수한 소득신고 관련 과세자료(T1/T2)와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GST), 급여공제(Payroll Deduction)자료와 각종 통계조사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사업체명부에는 약 850만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약 230만 사업체가 활동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 사업체는 고유번호(BN: Business Number)를 CCRA에 신청하고, CCRA는 해당 업체에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고유번호와 사업체 활동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캐나다 통계청으로 송부되며,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No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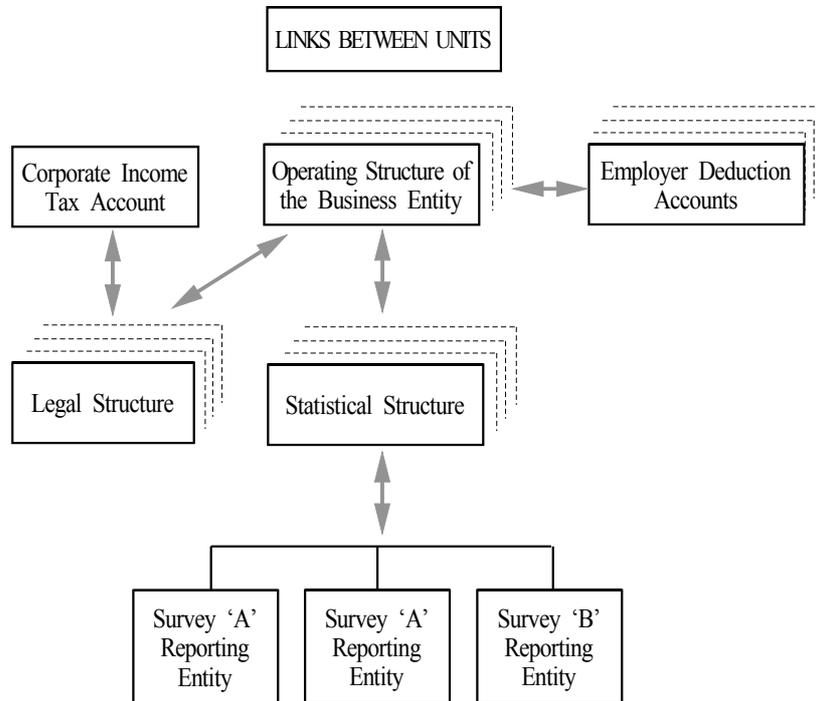
4)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1105&lang=en&db=IMDB&dbf=f&adm=8&dis=2>.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를 해당 사업체에 부여한 후, 사업체명부에 등록하게 된다. 사업체명부에는 식별정보로 사업체명, 주소 정보와 분류정보로서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지역코드, 종사자수, 사업소득 정보가 있으며, 연계정보로서 과세자료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고유번호, 기업조직형태 정보가 있다.

2) 정보 갱신과정

사업체명부는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는데, 고유번호 파일을 CCRA로부터 매월 입수하여 한 달에 한 번 신규 및 폐업 사업체에 대한 정보와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업체에 대한 최신정보를 갱신해 준다. 또한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자료의 피드백과 명부 질의결과를 활용하여 갱신해 준다.

[그림 5-2] 캐나다의 사업체명부 구성



3) 자료의 품질

사업체가 고유번호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에 의해 사업체모집단이 작성되기 때문에 모집단 자료의 품질은 대부분 CCRA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체명부의 정확도를 보증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체명부에 조사자료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데, 경제 관련 통계조사의 조사기간 동안 명부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변동사항이 조사되면 그 내용들을 사업체명부로 전달하여 변경해 준다. 또한, 2개 이상의 통계조사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단위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변화를 추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실무위원회(Joint Staff Committee)가 매주 소집된다.

4) 비밀보호조치 및 정책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통계법을 근거로 얻어진 자료들 중 특정 개인이나 사업체 또는 조직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를 서면으로 사전에 공지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표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기밀성이 높은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되거나 간행되는 모든 자료에 다양한 비밀보호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이든 추론에 의한 것이든 개별 자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삭제(suppression)하여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 통계청이 제안한 비밀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정책이다.

- ① 통계청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함.
- ② 자료의 일방적 흐름을 강조하며, 수집된 미시자료가 아닌 비밀 보호된 자료나 집계·요약된 자료만 공표됨을 홍보해야 함.
- ③ 행정자료의 활용에 따른 응답부담 감소와 예산 절감을 강조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비용 및 응답부담 절약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함.
- ④ 자료연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는 공개적인 정책은 자료 연계에 대한 통계청의 사려와 통제를 반증하며, 조건에 맞지 않는 연계 요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

- ⑤ 개인정보의 수집시 그 목적을 알려야 한다고 프라이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자료수집시 통계목적은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야 하며, 수집양식에 명백하게 표시할 경우 통계목적의 활용이 2차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충격 예방에 기여할 것임.
- ⑥ 민감한 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물리적인 보안조치는 명쾌하게 외부인이 볼 수 있어야 하며 일반 자료보다 조치가 더 엄격해야 함.⁵⁾
- ⑦ 통계자료에 대해 보안 또는 정보서비스의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신뢰를 위해 중요하며, 캐나다에서는 1983년에 면제가 이루어짐.

5) 그 외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

- ① 행정자료 관련문제와 상호이익을 검토,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양자위원회 설치
- ② 행정자료의 유용성과 약점 등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청이 행정기관에 통계자료를 피드백
- ③ 행정기관의 통계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서비스 제공
- ④ 자료수집사업 계획(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정부 정보수집 정책 마련
- ⑤ 행정시스템 내 가족, 사업체, 실업 등 표준화된 통계 정의 활용 촉진
- ⑥ 행정자료의 활용이 비용절약적 대안임을 확인하는 감사(audits)
- ⑦ 행정자료의 활용 확대 또는 조사 대안을 추구하는 정책 지침
- ⑧ 통계목적 행정자료 활용 또는 접근에 대한 법적 장애물 제거

나. 미 국⁶⁾

미국에서 사업체명부는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해 1968년 계획되었으며, 1972년 이후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유지·관리되어 왔다. 이 명부에는 750만 개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5) 캐나다 통계청의 경우 과세자료를 보관하는 부서는 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출입시 보안통제를 받고 있음.

6) 미국 센서스국: <http://www.census.gov/econ/overview/mu0600.html>.

있는 고용주 업체(employer business)와 2,100만 개 이상의 임금근로자가 없는 비고용주 업체(non-employer business)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체명부는 기본적으로 행정자료에 의해 작성되는데, 주로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노동통계국(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행정자료와 센서스국의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명부를 구축·보완하고 있다. 센서스국은 매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약 2,400만 건의 사업체 및 과세에 대한 기본정보인 BMF(Business Master File)를 받고 있으며, 매일 100만 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최신 BMF 정보를 받아 갱신하고 있다. 또한 연간 약 2,200만 건의 봉급세금신고(payroll tax returns) 자료와 사업체소득세신고(business income tax returns) 자료를 매주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매 분기마다 노동통계국에서는 사업체명부 자료와 노동통계국의 BEL(Business Establishment List)자료의 산업분류를 비교하여 북미산업분류코드를 센서스국에 제공한다. 센서스국에서는 이러한 행정자료들을 사업체명부의 주요 자료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사업체명부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조직조사(COS: Company Organization Survey)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자료와 기타 경제통계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사업체명부의 과세정보는 법률 United States Code Title 13과 IRS Title 26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다른 행정자료는 제공하는 행정기관과의 약속(contractual agreements, administrative directives) 등에 의해 보호된다. 법률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센서스국에서는 행정자료 제공기관과의 신뢰를 위해 제공기관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자료이용과 접근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료접근 권한 및 요청 내용, 자료전송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비밀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어겼을 시 받게 되는 처벌 등에 대해 인식시키는 교육도 하고 있다.

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사업체 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 행정자료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통계목적의 사업체명부인 ASIA (Italian Business Register)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의 주된 목표는 통계적 단위들의 최신정보를 저장하고,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그들의 주요 특성들과 경제활동상대, 규모 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사업체명부는 국세청, 상공회의소, 사회보험청, 산재보험청, 전력청, 전화번호부의 자료들을 통합시킴으로써 개발됐고,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제4절 사업체모집단 보완을 위한 주요 행정자료

행정자료를 사업체모집단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다음의 요인들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인들로 첫째, 자료에 적용되는 대상 사업체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포괄범위 측면, 둘째, 행정자료가 사업의 변동발생과 동시에 갱신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시의성 측면, 셋째, 사업체모집단을 구축하기 위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유항목 측면, 넷째, 행정자료의 항목과 통계조사 자료 간에 정의 및 기준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일치성 측면, 다섯째, 항목별 정확도가 미흡한 내용은 없는지와 같은 행정자료의 품질 측면, 여섯째, 해당 자료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가정보 측면, 일곱째, 자료의 접근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체모집단을 구성하는 정보를 크게 고유정보와 특성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유정보는 사업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정보이고, 특성정보는 사업체가 지니고 있는 성격을 파악해 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이다. 고유정보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와 같은 변수가 있고, 특성정보에는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내용, 취급품목,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 변수가 해당된다. 또한, 이 특성정보 중에서도 사업체 표본추출을 위한 변수로 사용되는 산업분류, 종사자수, 매출액은 핵심적인 정보이

다. 사업체모집단은 사업체명부와 표본 추출틀(Sampling Frame)로서의 역할이 1차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고유정보 및 핵심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자료가 고유정보 및 핵심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7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행정자료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모집단 보안을 위해 활용 가능한 주요 행정자료들은 <표 5-5>와 같다.

<표 5-5> 주요 행정자료 목록

	정보명	소관기관	대상	주기
1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청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	변동시
2	휴·폐업신고	"	"	"
3	부가가치세신고	"	"	연 2회
4	법인세신고	"	"	연 1회
5	국민연금신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변동시
6	건강보험신고	국민건강 보험공단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7	고용보험신고	근로복지 공단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농·임·어·수렵업은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8	산재보험신고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 업장(농·임·어·수렵업(별목업제외) 은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9	전기사용신청	한국전력	전기사용을 신청한 모든 사업체	"
10	지방세	지자체		"

1. 국세청 자료

가. 개요

사업체모집단 보완을 위해 활용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행정자료들 가운데 국세청 자료는 다른 행정자료에 비해 그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자료로는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등록신고 자료가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시에 신고하는 휴·폐업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같은 과세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의 장점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는 신고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는 각종 과세대상으로서 관리하므로 다른 행정자료들보다 자료의 포괄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는 사업체모집단을 구축·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존재한다. 물론 국세청 자료와 사업체모집단 자료 간 기준이나 정의에 차이가 있는 항목들이 다소 있지만, 이는 표준화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국세청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06년 통계청 직원 2명이 1년간 국세청에 파견근무를 나가 자료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때 검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 자료의 현황과 현 상태에서의 활용가치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나. 자료의 현황 및 유용성

사업자등록신청 자료의 대상은 '사업자'로 '사업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체모집단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업체모집단에서 제외대상인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사업장 면적이 없는 업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모집단에 비해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표 5-6>에 정리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약 412만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80만 업체가 폐업되었고, 88만 업체가 신규등록 되었다. 이와 같이 휴·폐업신고 자료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자료를 통해 신규 및 휴·폐업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국세청 자료에 수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자료입수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5-6〉 2005년말 기준 사업자등록현황

(단위: 개)

	총계	신규	폐업
합계	4,121,612	880,716	795,775
법인사업자	400,398	66,375 (7.5%)	41,761 (5.2%)
일반과세자	2,117,551	461,862 (52.4%)	393,941 (49.5%)
간이과세자	1,603,663	352,479 (40.0%)	360,053 (45.2%)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체모집단 거의 대부분의 항목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보유항목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이 다르거나, 결측값이 들어 있는 등 일치성과 자료의 품질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2006년 4월 현재 사업자등록 자료의 업종코드는 표준산업분류 4자리와 자체품목분류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이며, 표준산업분류는 1991년에 개정된 제6차 개정 분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8차 개정 분류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장소재지의 경우도 국세청 자료는 법정동으로, 사업체모집단은 행정동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업종코드의 약 95% 정도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업종코드가 미등록된 경우는 대부분 과세와 관련 없는 공공행정, 회원단체 등의 업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약 89.2%가 종업원 수가 없었고, 종업원 수는 별도의 신고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자등록 자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 사업체모집단에서는 조사되지 않거나 중복·오류 값을 갖는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추가정보로서 사업장소유구분, 과세금액에 대한 정보, 대차대조표 등을 활용할 경우 매출액 항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의 DB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등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과세목적이 아닌 통계목적으로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개체 식별 자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5-7〉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국세청 자료의 항목별 비교

	사업체기초통계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1	사업체명	상호명/법인명	상호명/법인명	상호명/법인명	법인명
2	대표자명/성별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3	응답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4	창설연월	개업일	—	—	사업연도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주소	소재지
7	사업장변동	—	휴·폐업기간 (일자)/사유	—	—
8	조직형태	개인, 법인성격	—	—	법인
9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0	사업체구분	지점여부	—	지점여부	—
11	본사현황	—	—	—	—
12	사업내용	업태	—	업태	업태
13	취급품목	종목	—	종목	종목
14	산업분류	업종코드	—	업종코드	주업종번호
15	종사자수	종업원수	—	—	—
16	연간매출액	—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	수입금액
기 타	자본금	—	—	납부세액	대차대조표 (자본금)

다. 선결과제

통계조사에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체는 조사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사업자등록 자료에는 사업장 면적이 없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외판원,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 개념의 사업체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체모집단의

포괄범위를 통계조사의 기준과 일치시켜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으로 국한할 것인지,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까지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과세신고는 사업자의 의지에 의해 신고여부가 결정되므로 지연신고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주민등록자료처럼 일정기간 동안 자료 일제정비기간을 두어 최초 신고 당시에 등록했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일괄 수정하는 정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청은 개정된 산업분류(5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종코드를 정비해야 할 것인데, 통계청은 이를 위해 산업분류 전문인력이나 산업분류 자동코딩 시스템 등과 같은 협력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종사자(종업원수)는 별도의 신고서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등록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국민연금자료

가.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노령, 장애, 유족) 연금을 지급하여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은 과거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단,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목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자와 개인사업장 대표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없이 개인사업장 대표만 있는 사업체나 개인사업장 대표와 임시·일

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체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소속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근로자 중 18세 미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와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제외시키며,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를 제외한 후에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도 가입자에 포함시킨다.

1) 사업장 가입 및 가입내역 변경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⁷⁾ 사업장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05조 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될 수 있다.

2) 사업장 분리적용 및 통폐합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데, 분리적용이란 이러한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시켜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를 신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의하여 분리할 수 있다. 또한, 본점과 지점을 분리적용하고 있다가 분리적용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점 사업장은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리적용을 해지(탈퇴)하는 지점 사업장은 분리적용사업장 해지신청서에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사에 제출하게 되면 분리적용이 해지되는 지점 사업장의 가입자는 본점 사업장으로 전입 처리된다.

7)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3) 사업장의 탈퇴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 탈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대상이 되고,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한다.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 내역변경

사업장 명칭이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신고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내역변경이 불가능하다. 첫째,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처리를 하고 법인사업장을 신규로 가입처리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개인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사업장을 신규 가입처리한다. 셋째, 위탁관리 중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업체 변경시 종전의 사업장은 탈퇴처리하고 신규로 가입처리한다.

5)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와 관리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3년 5월부터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 공통신고제도는 공통·유사 민원의 공동접수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민원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를 위해 공

통신고서 한 부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도록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이를 위해 업무절차 재설계를 위한 서식, 첨부서류, 위탁

〈표 5-8〉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사회보험 자료의 항목별 비교

사업체기초통계		4대보험 공통서식	국민연금	고용보험
1	사업체명	사업장 명칭	좌동	좌동
2	대표자명/성별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좌동	좌동
3	응답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좌동	좌동
4	창설연월	—	적용 연월일	성립일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좌동	좌동
6	소재지	소재지	좌동	좌동
7	사업장변동	—	—	—
8	조직형태	사업장형태 (법인, 개인)	좌동	좌동
9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좌동	좌동
10	사업체구분	—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11	본사현황 (본사명, 전화, 소재지)	—	본점내역 (사업장기호, 명칭, 사용자, 소재지, 전화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총상시근로자수, 총사업장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	사업내용	업태	좌동	좌동
13	취급품목	종목	좌동	좌동
14	산업분류	업종코드	좌동(중분류)	좌동(세세분류)
15	종사자수	—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16	연간매출액	—	(소득월액/납부금액)	(임금총액/확정보험료)
비고	적용대상사업장 고 (2006. 6월말)	—	750,000개소	1,336,000개소

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탈퇴사유 등의 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유관기관 정보와의 연계를 위한 공동정보 DB를 구축하였으며, 국세청, 행자부, 대법원, 건교부 등과의 자료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시 접수된 민원내역과 해당 기관에서 피드백 된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 자료의 현황 및 유용성

국민연금 자료의 포괄범위를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가입대상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업체와 비고용주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본점에서 각 지점이나 출장소의 자료까지 일괄 가입처리가 가능하므로 개별 사업장별로 분리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체모집단에 비해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기준으로 약 73만 개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장 통·폐합 및 탈퇴, 내역변경 등 사업장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접수된 자료는 어느 기한 내에 입력되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변동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여 자료의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모집단 항목과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국민연금 자료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항목의 세부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산업분류의 경우 사업체모집단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까지 구분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중분류 수준까지밖에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체모집단에서의 종사자 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개념상 차이가 있고, 사기초와는 달리 성별, 고용형태별로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가입자 수의 경우 그 숫자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단,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자격취득신고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입자의 성별, 소득월액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도 법정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사업체모집단과 코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창설연월, 연간매출액과 같은 항목의 경우, 정의는 다

르지만 국민연금자료의 적용연월일, 소득월액, 납부금액 등의 항목으로 유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항목 측면에서는 사업체모집단에 필요한 항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품질 면에서 살펴보면, 매월 국민연금 납부를 위해 사업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4대 보험간 공동정보 DB관리로 정보의 정합성이 향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다른 항목들에 오류가 있거나 결

〈표 5-9〉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자료 샘플 데이터

	사업장 기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형태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1	1000010	00공업사	개인	서울 용산구 청파0가 0번지 000호	-111-1111	-111-1111
2	1000020	0000사무소	법인	서울 성수구 성수0가 제0동 000번지 00호	02-1234-5678	02-1234-5679
비고	7자리 고유번호		개인-법인 구분	행정구역코드는 없으나 공백으로 구분		

	업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가입자수	적용 연월일	분리적용
1	섬유제품 제조업	0000000000	1111111111111	홍길동	5	1998-01-01	1
2	펄프, 종이제조업	0000000001	1212121212121	서장금	28	2003-05-06	3
비고	표준산업 분류 중분류	10자리	13자리			국민연금 적용연월	1:미분리 2:분리본사 3:분리지사

	본점 사업장 기호	본점 사업장 명칭	본점 소재지	본점 전화번호	본점 대표자 성명
1					
2	33440000	0000(주)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번지	02-000-0000	장길산

측이 있는 레코드가 많지 않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 측면은 2006년도에 국민연금 자료를 입수했던 경험도 있고, 그 경험과 개정된 통계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쏟는다면, 적극적이고 원활한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자료는 행정목적에 의해 설정된 대상의 제약으로 사업체모집단에 부분적으로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비고용주 사업체와 상시 근로자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원으로부터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중분류까지만 구분되어 있는 산업분류를 세세분류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법정동과 행정동 코드의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자료에 대해서는 5절에서 실제 자료를 분석해봄으로써 더 자세히 특성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3. 고용보험자료

가. 개요

고용보험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하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군·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⁸⁾과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고용보험에서 정의하는 상시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근로자와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여 일용 근로자가 포함되고, 대표자는 모두 제외된다. 따라서 가입적용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일수로 나누었을 때 1인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8) 1998. 10. 1 이후.

9) 법인인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처리는 신고접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사업장 전환이 발생한 경우 내역변경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자료도 국민연금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국 온라인 전산망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4대 보험 공통신고 서식에 의해 처리되므로 공통 신고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자료와 동일하다.

나. 자료의 현황 및 유용성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선정시 일용 근로자도 인정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연금 대상보다는 더 많은 사업체가 가입대상이 되며, 2006년 6월 기준으로 약 133만 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역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는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관리하므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고용보험 자료는 사업체모집단을 위한 대부분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 대신 상시 근로자 수와 피보험자 수를, 연간매출액 대신 임금총액과 확정보험료 항목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업분류가 사업체모집단과 마찬가지로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사업장소재지는 대한 코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이 자료에서 특징적인 것은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성별, 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 학력별, 직종별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조사에서처럼 기억에 의존하여 종사자 수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정보가 전산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통계조사의 결과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의 품질 역시 국민연금 자료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며, 접근성 측면은 기존에 자료를 입수했던 경험도 있고, 자료의 특성분석을 위해 곧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활한 협의가 예상된다.

〈표 5-10〉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자료 샘플 데이터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대표자명	성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1	19950000000	(주)oooo	김oo	1	인천 남동구 ooo	1000000000 000
	2	19980000000	ooo(주)	이oo	2	서울 강남구 ooo	1000000001 001
비고	11자리 고유번호				행정구역코드는 없으나 공백으로 구분	10자리	13자리

	근로자 수	업종코드	업종명	임금총액	확정보험료	
	1	20	20101	(일반제조업)	1,000,000,000	20,000,000
	2	54	72209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2,000,000,000	30,000,000
비고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4. 지방세

가. 개요¹⁰⁾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세 중 사업운영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주민세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과세대상이다.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통징수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원 균등할,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만원의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설치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서비스 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되

10) 지방세 연구회: <http://www.localtax.co.kr/epitome/epitome09.asp>.

는 조세로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재산할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며, 매년 7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며 매월 신고납부 받는다.

이러한 지방재정 부문은 1994년 지방세 비리사건을 계기로 예산회계·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전산화가 추진됐으나, 기관간에 지방재정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여 지방재정 의사결정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을 2004년 공식 출범시켰다. 이 사업단은 지방예산·회계·세제 및 자산·물품관리 등 지방재정 전 부문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IT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지방세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지방재정 업무가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통합관리·운영하고 있다.

나. 자료의 현황 및 유용성

지방세 자료는 세목에 따라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만 부과하는 과세기준에 의해 자료의 대상이 결정되므로 사업체모집단과 포괄범위에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사업소세는 연면적이 넓거나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축소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이 모두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개인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자 자의에 의해 누락될 여지가 있어 수집된 자료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집단의 일부 층에 부분적으로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의성 측면에서는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매월 신고·납부되지만, 사업소세 재산할 및 주민세는 1년에 한 번 징수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료갱신 측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보유항목 측면은 주민세 법인 자료와 사업소세 자료는 모두 종사자 수에 대한 정보와 매출액 대신 자본금 항목이 있으나, 주민세 개인사업자 자료에는 고유정보만 있고, 종사자 수나 연매출액과 같은 핵심정보가 없다. 또한 사업소세 자료를 통해 사업장 면적에 대한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던 자료들이 최근에 전국 통합

〈표 5-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지방세 자료의 항목별 비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주민세 (개인사업자)	주민세(법인)	사업소세
1	사업체명	상호	법인명	사업장명
2	대표자명 / 성별	대표자명	대표자명	대표자성명
3	응답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4	창설연월	—	—	—
5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	소재지	주소	주소	사업장소재지 (우편번호)
7	사업장변동	—	—	—
8	조직형태	개인	법인	—
9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0	사업체구분	—	업소구분(지점/본점/ 사업장/영업소/기타)	—
11	본사현황 (본사명, 전화, 소재지)	—	—	—
12	사업내용	—	—	—
13	취급품목	—	—	—
14	산업분류	주업종코드	—	—
15	종사자수	—	총종업원수/과세인원	총종업원수/ 과세인원
16	연간매출액	—	자본금	자본금/연면적
비 고	—	—	—	과세구분 (재산할/종업원할)

망으로 구축되어 표준화됨으로써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에서 관리하여 정비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게 되었으나, 대상자료 소유권이 각 지방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협상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5. 전기사용신청자료

가. 개요

사업장이 휴·폐업되지 않은 이상 사업체의 전기사용은 필수일 것이므로 전기사용신청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체는 전력을 공급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력 사용량 및 전력사용 용도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된다. 한전에서는 계약 종(種)이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으로 분류되는 약 1,800만 호에 대한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나. 자료의 현황 및 유용성

전기사용신청은 전기사용장소별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료수집 단위가 물리적인 장소라는 점에서는 개념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사업체의 중복과 누락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같은 오피스텔 내의 2개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단일 통제하에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각 사무실별로 전기 요금에 부과되므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건물 내에서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shop in shop)에 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어진 항목만으로는 주거용과 사업용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또한, 전입·전출이 발생해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등록된 자료와 현장상황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사업체에 한해서 갱신용도로 활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보유항목 측면에서는 고유항목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신청서 양식¹¹⁾을 참고하면 종사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11) 부록 참고.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 자료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체명이 없는 레코드가 많았으며, 고객명도 사업체 대표명이 아닌 건물 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사업체명이 들어 있는 레코드가 많았다. 전화번호는 핸드폰 번호도 기재 가능하고, 소재지역과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종별이 ‘주택용’이고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체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약종별이나 사용용도 변수만으로 해당 레코드가 사업체 정보인지 가구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금발행 목적으로 신청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업체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월별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조업 중인지 휴·폐업 상태인지를 추론하는 등 생산활동 보조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전 자료를 바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

〈표 5-12〉 전기사용 신청자료 샘플 데이터

	고객명	신청 일자	사용장소	상호	전화번호
1	00연구소	20070710	대전광역시 00구 00동 산00-0	00연구소	042-000-0000
2	00000(주)	20070126	대전광역시 0구 00동 0000빌딩	00000(주)	010-0000-0000
비 고			행정구역코드는 없으나 공백으로 구분	공백레코드 다수	지역번호 오류

	계약종별	사용용도	계약 전력	사용량 '07.09	전기요금 '07.09	개월수
1	산업용(갑) 고압A	산업용	2500	84,816	9,192,028	3
2	산업용(을) 고압A	광공업용	300	2,722	349,424	6
비 고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 심야전력, 임시전력	주거용, 관공용, 기타 공공용 산업용, 광공업용, 아파트용, 연립주택용, 농사용, 국군용		월별 사용량	월별 전기요금	

다. 자료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신청·변경 등에 대한 신고규정을 강화하고, 자료 정비작업을 수행하여 자료의 품질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5절 국민연금자료의 활용성 검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연계(matching)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자료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연계 및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2006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조사된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총 3,204,809건의 사업체 정보와 2006년 6월 13일 현재 전국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자료 735,017건을 사용하였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국민연금 자료 각각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대전지역을 대상으로 두 자료를 연계해 본 후, 그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기초분석

가. 국민연금 자료의 변동현황 분석

국민연금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의 신규등록 및 탈퇴 사업장 현황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5-13>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월별 신규등록·탈퇴 사업장 수가 나와 있다. 신규등록(탈퇴)률은 해당 월 신규(탈퇴) 사업장 수를 전월 말일 기준 총 사업장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text{신규등록(탈퇴)률(\%)} = \frac{\text{해당 월 신규(탈퇴) 사업장 수}}{\text{전월 말일 총 사업장 수}} \times 100$$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약 20만 개의 사업장이 신규등록을 하였고, 약 7만 3천 개의 사업장이 탈퇴하였으며, 한 달 평균 16,526건의 신규등록과 6,101건의 탈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6년 1월

에 등록률이 5.34%로 다른 월에 비해 매우 높은데, 이는 당연적용사업장 적용 대상의 확대가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13〉 국민연금의 월별 신규등록 및 탈퇴 사업장 현황

(단위: 개, %)

기준 월 (해당 월의 말일)	총 사업장 수	신규등록		탈퇴	
		사업장 수	등록률	사업장 수	탈퇴율
2005. 7.	621,389	10,101	-	6,674	-
2005. 8.	624,575	9,376	1.51	6,190	1.00
2005. 9.	629,206	9,750	1.56	5,119	0.82
2005.10.	634,010	9,822	1.56	5,018	0.80
2005.11.	642,874	14,565	2.30	5,701	0.90
2005.12.	646,805	8,118	1.26	4,187	0.65
2006. 1.	673,647	34,517	5.34	7,675	1.19
2006. 2.	691,411	24,619	3.65	6,855	1.02
2006. 3.	706,329	21,924	3.17	7,006	1.01
2006. 4.	719,890	19,519	2.76	5,958	0.84
2006. 5.	730,695	16,793	2.33	5,988	0.83
2006. 6.	743,061	19,209	2.63	6,843	0.94
1년 합계	-	198,313	-	73,214	-
1년 평균	671,991	16,526	2.55	6,101	0.91

1년 평균 신규등록 및 탈퇴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H(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의 연평균 신규등록률이 7.31%이고, 탈퇴율도 1.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생·소멸이 자주 일어나는 업종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2006년 1월 이후로 등록률이 급증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당연사업장 적용대상의 확장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가입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발생한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자료에 얼마나 잦은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업장변경 내역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약 20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는데, 한 달 평균 약 16,728건 정도의 변경건수가 발생한다. 주 변경 사유로는 사업장 주소의 변경이 약 43%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대표자)의 변경이 27%, 사업장 명칭 변경이 16% 순으로 나타나 모집단 구축을 위한 고유정보들의 변경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14〉 지역별 신규·탈퇴 현황

(단위: 개, %)

지역	총 사업체 수 ¹⁾	평균 등록률 ²⁾	평균 탈퇴율
계	743,061	2.48	0.92
서울	225,633	2.47	0.94
부산	51,942	2.42	0.91
대구	33,254	2.39	0.89
인천	36,692	2.50	1.01
광주	17,789	2.58	0.97
대전	18,151	2.44	1.01
울산	12,876	2.24	0.84
경기	156,353	2.70	0.95
강원	18,897	2.51	0.97
충북	19,413	2.71	1.18
충남	24,121	2.53	0.77
전북	22,480	2.41	0.80
전남	21,371	2.08	0.64
경북	33,522	2.07	0.83
경남	43,004	2.27	0.91
제주	7,563	2.52	0.66

주: 1) 2006년 6월 말일 현재.

2)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낸 값.

〈표 5-15〉 산업별 신규·탈퇴 현황

(단위: 개, %)

산업	총 사업체 수	평균 등록률	평균 탈퇴율
계	743,061	2.48	0.92
A	1,987	3.61	1.07
B	931	4.09	0.88
C	1,148	1.31	0.93
D	170,999	2.11	0.85
E	1,404	0.91	0.61
F	75,646	1.68	0.96
G	170,604	3.10	0.99
H	27,291	7.31	1.56
I	20,817	2.07	0.73
J	1,125	1.47	1.09
K	8,014	1.47	0.58
L	23,581	4.2	0.94
M	77,276	1.91	0.95
N	9,909	3.15	1.25
O	43,340	2.31	0.85
P	54,163	1.36	0.73
Q	2,597	1.43	0.91
R	50,252	2.94	0.99
S	1,792	1.81	1.14
T	185	1.57	0.53

나. 특성비교

두 자료를 직접 연계하기 전에 각 자료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규모나 항목별 분포형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국민연금 자료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두 자료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표 5-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기초(A)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이하 사기초)의 총 사업체 수이며 사기초(B)는 자영업주가 1명이면서 상용종사자 수가 0인 경우를 제외한 사업

체 수를 의미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는 근로자 없이 개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가 제외되므로 국민연금과 사기초의 적용대상 기준을 유사하게 비교하고자 한다면 사기초(B)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초에서는 약 320만 개, 국민연금은 약 73만 개의 사업체 정보가 있다. 대상기준을 유사하게 맞춰준 사기초(B)의 경우를 보더라도 약 40만 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자료의 지역별 비중의 차이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국민연금 자료가 사기초에 비해 비중이 높다. 이는 다사업체의 경우 본사위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다.

〈표 5-16〉 지역별 분포 비교

(단위: 개, %)

행정구역	사업체기초통계				국민연금		차이(C-A)
	사업체수 (A) ¹⁾		사업체수 (B) ²⁾		사업체수 (C)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3,204,809	100.0	1,124,714	100.0	735,014	100.0	-
서울	741,229	23.1	288,200	25.6	223,186	30.4	7.2
부산	263,638	8.2	80,684	7.2	51,577	7.0	-1.2
대구	179,780	5.6	56,166	5.0	32,975	4.5	-1.1
인천	154,737	4.8	54,403	4.8	36,154	4.9	0.1
광주	95,287	3.0	32,442	2.9	17,600	2.4	-0.6
대전	90,366	2.8	29,852	2.7	18,045	2.5	-0.4
울산	65,309	2.0	21,637	1.9	12,753	1.7	-0.3
경기	596,133	18.6	231,231	20.6	154,320	21.0	2.4
강원	116,163	3.6	35,984	3.2	18,673	2.5	-1.1
충북	97,142	3.0	31,915	2.8	19,211	2.6	-0.4
충남	125,538	3.9	41,787	3.7	23,838	3.2	-0.7
전북	118,809	3.7	39,424	3.5	22,265	3.0	-0.7
전남	125,074	3.9	40,556	3.6	21,154	2.9	-1.0
경북	181,069	5.6	55,025	4.9	33,189	4.5	-1.1
경남	211,230	6.6	70,010	6.2	42,599	5.8	-0.8
제주	43,305	1.4	15,398	1.4	7,475	1.0	-0.3

주: 1) 총 사업체수.

2) 자영업주가 1명이면서 상용종사자수가 0인 사업체를 제외한 경우.

〈표 5-17〉 산업별 분포 비교

산업(대분류)		사업체기초통계		국민연금		구성비 차이 (B-A)
		사업체수 (A)	구성비(%)	사업체수 (B)	구성비(%)	
합계		3,204,809	100.0	734,843	100.0	-
A	농업 및 임업	1,924	0.1	1,947	0.3	0.2
B	어업	385	0.0	882	0.1	0.1
C	광업	1,858	0.1	5,782	0.8	0.7
D	제조업	340,183	10.6	164,697	22.4	11.8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536	0.0	1,407	0.2	0.1
F	건설업	89,511	2.8	5,266	10.2	7.4
G	도매 및 소매업	864,687	27.0	167,997	22.9	-4.1
H	숙박 및 음식점업	621,279	19.4	25,919	3.5	-15.9
I	운수업	338,642	10.6	20,625	2.8	-7.8
J	통신업	9,371	0.3	1,126	0.2	-0.1
K	금융 및 보험업	34,690	1.1	7,984	1.1	0.0
L	부동산 및 임대업	116,190	3.6	23,100	3.1	-0.5
M	사업서비스업	87,671	2.7	76,780	10.4	7.7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 장행정	12,570	0.4	9,858	1.3	0.9
O	교육서비스업	127,284	4.0	43,047	5.9	1.9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6,074	2.4	53,983	7.3	5.0
Q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 비스업	128,637	4.0	2,603	0.4	-3.7
R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 비스업	352,317	11.0	49,861	6.8	-4.2
S	가사서비스업	-	-	1,795	0.2	-
T	국제 및 외국기관	-	-	184	0.0	-

산업별로는 국민연금 자료에서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중이 사기초에 비해 높은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사기초에 비해 낮다. 이는 소규모사업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국민연금 자료에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18〉 종사자 규모별 분포 비교

종사자 규모	사업체기초통계				국민연금		구성비 차이 (C-B)
	사업체수 (A)		사업체수 (B)		가입자수		
	(총종사자)	구성비(%)	(상용종사자)	구성비(%)	(C)	구성비(%)	
합계	3,204,809	100.0	3,204,809	100.0	735,015	100.0	-
0	1,286,445	40.1	2,096,686	65.4	10,506	1.4	-64.0
1	877,862	27.4	366,977	11.5	91,696	12.5	1.0
2	329,851	10.3	201,417	6.3	145,811	19.8	13.6
3	184,498	5.8	121,264	3.8	111,743	15.2	11.4
4	112,336	3.5	81,203	2.5	79,183	10.8	8.2
5~9	299,104	9.3	168,604	5.3	161,704	22.0	16.7
10~29	162,951	5.1	119,003	3.7	98,252	13.4	9.7
30~99	52,285	1.6	39,897	1.2	27,281	3.7	2.5
100~999	11,463	0.4	9,467	0.3	8,388	1.1	0.8
1000~9999	343	0.0	284	0.0	432	0.1	0.0
10000+	7	0.0	7	0.0	19	0.0	0.0

종사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기초에서 총종사자 수가 0명인 사업체는 전체의 약 40%에 달하며, 상용종사자 수가 0명인 사업체는 약 209만 개로 약 65%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상시근로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사업장 적용기준 산정시 포함시키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비교해 보면 종사자규모별 분포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표 5-19〉 조직형태별 분포 비교

사업체기초통계			국민연금			구성비 차이 (B-A)
조직형태	사업체수 (A)	구성비(%)	사업장형태	사업체수 (B)	구성비(%)	
합계	3,204,809	100.0	합계	735,017	100.0	-
개인사업체	2,746,284	85.7	개인	371,259	50.5	37.9
비법인단체	85,494	2.7				
회사법인	274,895	8.6	법인	363,758	49.5	-37.9
회사이외법인	61,348	1.9				
국가,지자체	36,788	1.1				

다음으로 조직형태별 분포에서는 사기초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국민연금 자료는 개인과 법인의 비중이 반반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법인 자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

2. 자료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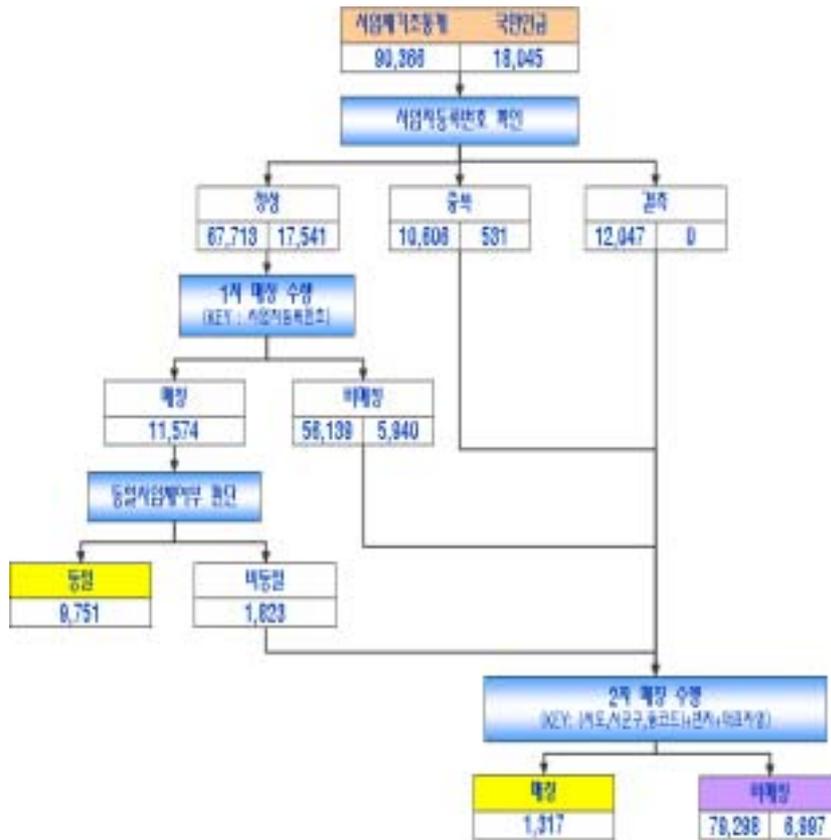
국민연금과 사기초 자료의 연계작업은 대전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국민연금 자료의 사업장 소재지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혼용하였고, 행정구역코드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행정동-법정동 연계표와 일일이 대조해 행정구역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적은 대전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사기초에서 조사되는 대전지역 사업체는 약 9만 개, 국민연금에 등록된 사업체는 약 1만 8천 개이다.

두 자료의 연계는 다음 [그림 5-3]과 같이 2단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변수로 사용하여 정확연계(exact-matching)를 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

여 중복과 결측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부여된 사기초의 67,713개 사업체와 국민연금의 17,541개 사업체를 연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계작업 결과 11,574개의 사업체가 연계되었다. 1차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만을 비교하여 연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동일한 사업체의 정보로 연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사업체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1,574개의 사업체 중 동일한 사업체임이 확인된 사업체는 그 중 9,751개로 이로써 1차 작업에서 연계를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2차 연계작업을 위해 9,751개의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를 연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오

[그림 5-3] 국민연금 자료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의 연계과정



류로 연계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체와 연계대상이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계되지 않은 사업체, 연계는 되었으나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2차 연계작업을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고유정보를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소재지 정보인 시도·시군구·동 코드와 번지수 그리고 대표자명을 이용하여 총 1,317개의 사업체가 연계되었다. 국민연금 자료 기준으로 약 1만 8천 개 사업체 중 약 7천 개의 사업체를 제외한 1만 1천 개의 사업체가 최종적으로 연계되어 61.3%의 연계율을 보였다.

1차 연계단계에서 동일사업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준이 <표 5-20>에 나와 있다. 이 작업은 연계된 자료의 사기초 내용과 국민연금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사용된 기준은 통계청(2007c)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사업체명, 시도, 시군구 코드, 동이름, 번지수, 대표자명, 전화번호 변수를 이용하여 총 11개의 조건식을 만들었고,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마다 1점씩을 부여했다. 11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사업체는 11점, 모두 만족하지 않을

<표 5-20> 동일사업체 여부 판단 기준

	사업체기초통계	조건	국민연금	점수
1	사업체명 / 앞 한자리	C	사업장명칭	1
2	사업체명 / 앞 두자리	C	사업장명칭	1
3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1
4	동이름 / 앞 한자리	C	동이름	1
5	동이름 / 앞 두자리	C	동이름	1
6	번지 수	C	주소	1
7	대표자명 / 첫째 자리	=	대표자명 / 첫째 자리	1
8	대표자명 / 둘째 자리	=	대표자명 / 둘째 자리	1
9	대표자명 / 셋째 자리	=	대표자명 / 셋째 자리	1
10	전화번호 뒤 4자리	=	전화번호 뒤 4자리	1
11	전화번호 뒤 8자리	=	전화번호 뒤 8자리	1

경우 0점을 받게 되고, 이 점수가 높을수록 동일한 사업체의 자료가 연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점수를 부여한 결과, 9~11점의 사업체를 동일사업체로, 5~8점을 유사사업체로, 0~4점을 비동일사업체로 분류하였다.

<표 5-21> 동일사업체 여부 분석 결과

점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일여부	연계여부
0	2,130	0.45	11,823	2.51	비동일사업체	비연계
1	1,127	0.24				
2	2,643	0.56				
3	2,954	0.63				
4	2,969	0.63				
5	10,623	2.26	74,089	15.76	유사사업체	비연계
6	10,122	2.15				
7	16,906	3.60				
8	36,438	7.75				
9	82,989	17.65	384,315	81.73	동일사업체	연계
10	79,791	16.97				
11	221,535	47.11				

3. 연계결과 분석

최종 연계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두 자료간 특성정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고, 연계된 자료의 구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표 5-22>를 보면, 항목별 부합률이 나와 있는데, 산업분류 대분류의 경우 일치한 경우가 75.7%이며 중분류의 경우는 60.5%로 나타났다. 조직형태의 경우 94.2%로 높은 부합률을 보였고, 창설연도와 적용연도 간에는 75.2%로 불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종사자 규모에 대해서는 사기초의 상용종사자 수와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를 비교하였다. 종사자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77.3%로, 이를

〈표 5-22〉 항목별 부합률

(단위: 개, %)

	산업분류(大)		산업분류(中)		종사자 수		조직형태		창설연도	
	개	%	개	%	개	%	개	%	개	%
일치	8,384	75.7	6,697	60.5	2,510	22.7	10,426	94.2	2,742	24.8
불일치	2,684	24.3	4,371	39.5	8,558	77.3	642	5.8	8,326	75.2

<표 5-23>에서 규모 그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기초의 사업체가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5인 미만인 경우가 5,943개였다. 표의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양 자료의 종사자 규모그룹이 일치한 사업체의 수이다. 다음의 표에서 사기초에서 3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정부기관이었고,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표 5-23〉 종사자수 그룹별 부합수

(단위: 개)

국민연금 사기초	국민연금						
	5인 미만	5~9	10~19	2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5인 미만	5,943	628	49	15	4	6	0
5~9인	589	1,521	183	28	10	4	2
10~19인	100	224	688	54	8	5	1
20~49인	36	47	134	334	22	6	2
50~99인	15	9	64	53	81	11	1
100~299인	15	7	7	11	14	53	5
300인 이상	20	10	5	8	10	8	18

다음은 각 자료의 총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연계된 자료와의 구조를 비교하여 보았다. 각 자료의 대분류 산업 내에서 연계된 사업체와 연계되지 못한 사업체의 비중을 <표 5-24>에 정리하였다. 사기초 기준으로

연계율은 약 12%인데, 산업 내에서 이를 밑도는 산업은 H, I, L, Q, R이다. 이는 기초분석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사기초 기준 사업체 수가 국민연금 사업체 수보다 많은 산업에서 연계되는 비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차이는 대상 자료의 규모 자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 가능했던 결과이다.

〈표 5-24〉 산업별 구조차이

(단위: 개, %)

산업분류	사기초 총사업체수	사기초 기준 연계된 비율	사기초 기준 비연계된 비율	국민연금 기준 연계된 비율
A 농업 및 임업	9	66.7	33.3	50.0
B 어업	-	-	-	33.3
C 광업	8	62.5	37.5	70.1
D 제조업	6,528	24.4	75.6	64.0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8	3.6	96.4	50.0
F 건설업	2,468	40.4	59.6	48.3
G 도매 및 소매업	25,145	10.3	89.7	63.9
H 숙박 및 음식점업	17,514	3.1	96.9	78.4
I 운수업	9,748	2.8	97.2	55.5
J 통신업	278	11.9	88.1	55.6
K 금융 및 보험업	1,033	11.8	88.2	50.6
L 부동산 및 임대업	3,420	8.9	91.1	34.3
M 사업서비스업	2,677	41.6	58.4	54.6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307	27.0	73.0	48.7
O 교육서비스업	3,837	17.5	82.5	63.8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600	77.8	22.2	79.6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978	2.3	97.7	56.5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0,888	5.6	94.4	55.4

<표 5-25>에는 종사자 규모 그룹별 구조차이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기초에 상용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가 총 82,079개이고, 이 사업체 중에서 6,645개의 사업체 약 8.1%만이 연계되고 75,434 사업체가 연계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기준에서 보면, 5인 미만의 가입자 수를 보유한 사업체 중 59.5%가 연계되었고, 40.5%가 연계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준에서는 가입자 수 규모별 연계 가능성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사기초 기준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체가 연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기초에서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 비법인 단체의 연계 가능성은 회사법인보다 낮으며, 사기초의 창설 연도, 국민연금의 적용연도가 최근일수록 연계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표 5-25> 종사자수별 구조차이

(단위: 개, %)

상용종사자 수/ 가입자 수	사기초 총 사업체수	사기초 기준 연계된 비율	국민연금 기준 연계된 비율
5인 미만	82,079	8.1	59.5
5~9인	4,386	53.3	64.1
10~19	2,093	51.6	63.6
20~49	1,118	52.0	64.9
50~99	459	51.0	65.1
100~300	221	50.7	62.8
300인 이상	116	68.1	56.9

<표 5-26> 조직형태별 구조차이

(단위: %)

조직형태	사기초 기준 매치된 비율	국민연금 기준 매치된 비율
개인사업체	8.4	68.9
비법인단체	12.5	
회사법인	47.6	52.5
회사이외법인	29.7	
국가, 지자체	29.7	

〈표 5-27〉 창설연도별 구조차이

(단위: %)

창설연도/ 적용연도	사기초 기준 매치된 비율	국민연금 기준 매치된 비율
~1999	16.0	65.6
2000	16.9	62.7
2001	15.3	65.6
2002	12.9	64.4
2003	11.3	69.9
2004	9.9	66.2
2005	6.8	50.0
2006	4.5	47.6

요약하면, 국민연금 자료는 대상자료 기준에 차이가 있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사업체모집단의 일부 층인 상용종사자 수 5인 이상 회사법인 사업체에 대한 정보로는 활용할 수 있다.

제6절 결론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사회 환경과 제도에 대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는 않았으나 단계적으로 마련해 가는 과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개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사업체모집단 보완 및 경제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들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국세청 자료의 경우 자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통계법상 별도의 근거규정의 추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제공받을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법률조항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목적이 아닌 다른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통계법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료제공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및 법적 근거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행정자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 통계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령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행정자료 활용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예산절감 효과, 응답부담의 감소 등의 혜택을 강조하면서 활용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안전이 병행되어야만 효과적인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비밀 보호장치, 보안상의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설득과정이 필요하다. 행정자료를 본격적으로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절차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자료 보유기관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의 자료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표준산업분류 등에 대한 권고안 작성, 실무자들 간 상시 협의체 구축,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부처별 행정자료 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행정자료 등록·신고시에 해당 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와 조사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가야 할 것이다.

사업체모집단자료로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만큼, 통계조사 자료와 활용 가능성이 높은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누락·중복·변동 사항에 대한 모집단 반영률을 높이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자료 활용도 측면에서는 국세청, 고용보험, 국민연금 순이며, 자료 접근성 측면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세 및 한국전력 자료는 상당기간 동안 정비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료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일시에 행정자료에 대한 재신고나 짧은 기간 동안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품질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검토했던 행정자료를 사업체모집단 보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이 많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한다. 사업자등록 자료 및 사회보험 자료로 신규·폐업 사업체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자료를 이용하여 조업상태를 파악하여 휴·폐업상태를 진단해봄으로써 좀 더 정확한 사업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명부 제공을 위해 사업체의 고유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사업체모집단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마다 자료를 갱신해 주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사결과와 정확도가 미흡하여 공표 및 대외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매출액 항목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자료 또는 고용보험 자료의 임금총액 등을 사용해서 대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현장조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미숙련 임시조사원에 의해 조사된 산업분류는 정확도가 매우 미흡하고, 조사오류에 대한 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자료로 조사오류가 많은 종사자 수를 수정하고, 종사자의 세부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통계조사 불응사업체에 대한 대체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사업체모집단을 정확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우선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데 필요한 기준변수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지사나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응답이 정확하지 않아 행정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즉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주기적인 갱신작업이 가능하도록 모집단 시스템 및 연계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통계조사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변동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현 사업체모집단을 주기적인 자료입수를 통해 갱신해줌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비업무 부담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체모집단 구축을 위한 고유번호 연계작업시 재조사 업무가 감소하여 관리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 예

상된다. 또한 고유번호 연계작업이 통계조사 접수시점에 편중되는 현상을 주기적인 갱신작업을 통해 연중 분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탐색부터 협상, 입수, 분석, 활용, 유지보수에 이르는 행정자료 활용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통계청 내부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용 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안장치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하여 생멸통계, 패널구축과 같은 새로운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한다.

통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서 행정자료 시스템을 검토하여 이를 활용하게 되기까지는 수십 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료를 통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검토, 표준화, 활용, 협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2006), “4대 사회보험 업무담당자 전산교육교재”.
국민연금관리공단(2006),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사업장 실무 가이드북”.
김성태(1998), “전자 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행정 정보 공동 활용 지혜
요인 분석: Fish-bone Analysis의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8권 제1호.
- 김영수(2005), 「사업체·기업체 통계 정도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사업
체통계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체·기업체통계 내검 및
분석 방법 등 연구」.
- 손상익(2007), “해외 기업생멸통계의 작성방법론”, 「통계수요에 대응하
기 위한 통계개선방안」,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명진·서우석·이건(2006), 「주거부문 행정등록자료의 인구주택총조
사 활용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검토: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통
계청.
- 이민영(200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추진 방향과 법적 과제”, 「정보통
신정책」, 제18권 5호 통권 389호.
- 이재형(2003),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통계청 용
역보고서.
- 정동욱(2007), “공간개념 조사구를 활용한 사업체 관리”, 「2007년도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조사연구학회.
- 통계청(2005), “사업체모집단 DB 관리 업무편람”.
- _____ (2006a),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사
후조사지침서”.
- _____ (2006b), “2005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잠정결과”.
- _____ (2006c),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 통
계청의 통계 활용을 중심으로」.
- _____ (2006d), 「행정자료활용 외국사례집」.
- _____ (2007a), “고유번호 연계 방법”.
- _____ (2007b),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직무편람”.

통계청(2007c),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
행결과 보고서」.

_____ (2007d), “행정자료 통계목적 활용 업무편람”.

한성희(2002),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연구 - 경제통계 중심”, 「통
계」, 제28권 제2호 통권 제55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행정자치부(2005),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추
진계획”.

Berard, Helene, Stuart Pursey, and Eric Rancourt(2005), “Re-thinking
Statistics Canada's Business Register”,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Research Conference.

Brackstone, G. J.(1987), “Issues in the Use of Administrative Records for
Statistical Purposes”, *Survey Methodology*, Vol.13, No.1. pp.29-43,
Statistics Canada.

Consalvi, Monica(2005), “Role of the Business Register in the Statistical
System”, 19th International Roundtable on Business Survey Frames.

Eurostat(2002), “Business Register Recommendations Manual Chapter 20:
The use of Administrative Sources”.

Israel(2007), “Pros and Cons for Using Administrative Records in Statistical
Bureaus Submitted by Israel”,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Konschnik, Carl A.(1988), “Coverage Error in Establishment Surveys”.

Statistics Canada(2000), “Statistics Canada Business Register - A Brief
Guide”.

Vicari, Paola(2002), “A Quality Survey to Test the Italian Statistic Business
Register: the education, health, social, cultural section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proving Surveys.

Wallgren, Anders, Britt Wallgren(2007), *Register-based Statistics - Administrative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John Wiley & Sons Ltd.

Yung, Wesley, Eric Rancourt, and Mike Hidioglou(2007), “Administrative
Data in Statistics Canada's Business Surveys: The Present and the
Future”, Seminar on Registers in Statistics-methodology and Quality.

< 부 록 >

1. 통계법 개정법률(개정 2007.4.27, 시행 2007.10.28.)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징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1996.12.30 법 5189] [개정 2006.12.30 제81조의8에서 이동]

접수번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영업시간 149)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격사항

법인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매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출급사업장소재지		출급사업장 등록번호	
전화번호(사업장) (국외번호)		전자우편주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단위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안에 O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부	내영리 단체 소재지	국 가 소재지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법인 기타	지점 (국내사 임장)
				연 국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조합법인 해당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 외부 법인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국 적
	여 부			여 부	투자비율

3.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지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특 별 소 비 세		주 유 면 허		부가가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재 조 권 대	강 소 유	면 허 번호	면 허 신 형	여 부	신고	등록	연8다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 리 기 간
		7일(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격사항

상 호(단 체 명)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자 력) (휴대전화)
성 명(대 표 자)		F A X 번 호	
주 인 등 록 번 호		E-Mail주소	@
사 업 장 (단 체) 소 계 지			

2. 사업장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인(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m'	m'					원	원
인 허 가 사업여부	신고() 등록() 허가()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부()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판매() 장소() 유통()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부()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원 사업장 신설여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가로210mm× 세로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종)]

[별지 제7호서식(1)] (알 록)

접수번호	사업자등록경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처리기간
	(법인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 사항	상 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신 고 내 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종관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부동산)		
정	사 업 의 종 류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무 업 태	무 종 목	무업종코드
합	사업장 구분 및 면적		
	자 가	타 가	여 무
	사업장을 빌려온 사람(임대인)		
	사업장등록번호		
	주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	임 대 차 제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원		
	주 류 면 허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		
항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제 조		
	판 매		
	장 소		
공사업	유 용		
	여 부		
	변경구분 (해당란에 ○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 계	
		성 립	
		채용명	
		탈퇴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신 고	송달받을 장소 <input type="checkbox"/> 주소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신 고 이 유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경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input type="checkbox"/>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경정신고 (확정일자 번호 :) <input type="checkbox"/> 종관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신청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경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조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기재요령	1.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실 예) ○○분 ○○○○면적 ○○호 ○○상가(별첨) ○○동 ○○층 ○○○○호		

[별지 제5호서식] (01.4.3. 개정)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신고서										처 리 기 간				
										즉 시				
사 업 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성 명 (대표자)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사 업 자 소 계 지	시	군	읍	면	가	번	지	호	아파트 입자	동	호	통	번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⑥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⑦ 폐업일자	년 월 일				
⑧ 휴업/폐업 사 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연세포기
	1	2	3	4	5
	연세적용	제 적	해산(합병)	기 타	
	6	7	8	9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 수 료

없 음

※ 참고사항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
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당면 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임의 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사업장(기관)직통신고서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설정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설정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가입신청서 ※ 차라기간·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제1회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적용 신고서 공동대표자, 단원사업장 및 영업을 같이 있는 경우 제2회 앞면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서 "연장공약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사업장 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개인		
	소 재 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E-mail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업 태	종 목	(주성상표)				*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국민 연금	근 로 자 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관리직용사업장 담당자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건설현장사업장 담당자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본점(보사업장)소재 지	사업장기호	사업장명칭				사용자			
건강 보험	단원사업장수 (지점, 대리점, 공점)	적용대상자수		사업장특성부호		적용연월일				
	건설현장사업장 담당자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본사사업장기호			건설현장 사업기간				
	외재종류 (공무원 및 교직원기관 제외)	1	2	3						
	우거대량용기관	은행명	계급부명			계좌번호				
	자금이체신청 은행명	계급부명		계좌번호(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고용 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계보합자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전화 :)		
		업 종						(주성상표 :)	*입종코드	
		총상시근로자수								
출시업종수				출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규모기업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산 재 보험	상시근로자수	명		사업의 종류		*사업종목코드				
	사업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계속 <input type="checkbox"/> 용기(사업기간: -)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취와 같이 신고(신청) 합니다.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kg/m²(재활용품)

<p>건강보험의 경우 공동대표자와 환할 단위사업장 및 영업소가 있을 때에는 '공동대표자현황',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설정 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제출 하십시오.</p> <p>신고(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산재보험은 5일,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p> <p>-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p>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p>신고(신청)서 제출</p> <p>수령</p>	<p>신고(신청)서 접수 및 확인</p> <p>신고(신청)서 처리</p> <p>사업장현황(현황)·보험 관계 설정 확인통지</p>
<p>(구 제 세 율)</p>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서에 한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동)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고용보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한함)
<p>(작성요령 및 유의사항)</p>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관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계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을 기재합니다.
건강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채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채 금융기관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자동이체신청"란의 세근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 종목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등록정보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근거법 7. 일반근로자사업장 4.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p>※ "(총)피보험자수"란은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예 :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3.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4.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5. "주변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변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설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제연보장법」의 당면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사업주는 매년도 3월말(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일부만 70일 이내)까지 고용·산재보험(임금 제연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주(간접임·벌목업 및 연도중 신규적용 사업장은 제외)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취급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 분기별 보험료 및 부담금을 부과하지하면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 기간을 경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3.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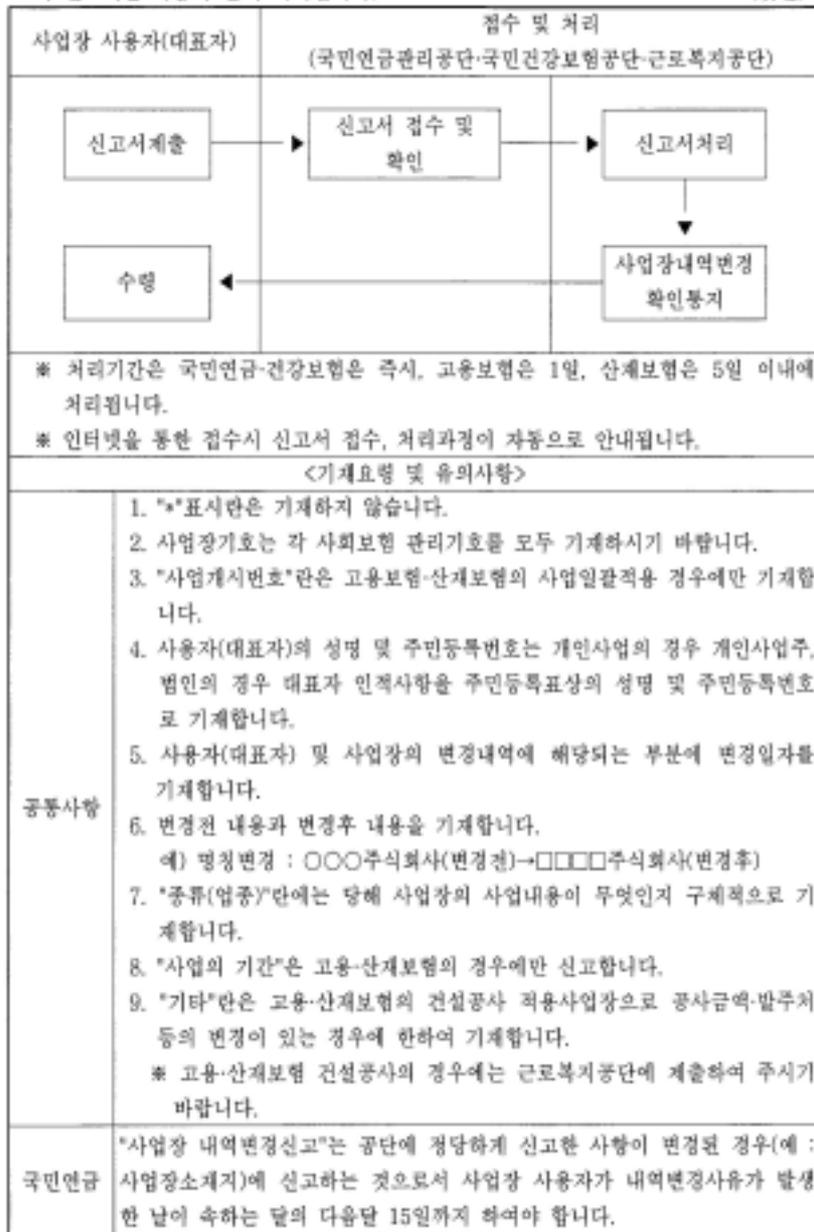
(앞면)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변경시행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 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조합 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주)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 증			
		우편물수령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 건강보험의 경우 권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 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 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종))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국민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탈퇴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소멸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소멸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강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 호	*광 동 기 호		국 민 연 금		
	건 강 보 험		고 용-산 재 보 험		
사 업(주)번호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사업장 (사업주)	별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계 지	우 권 번 호(-)	전화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권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고 사 유	<input type="checkbox"/> 계약도산 <input type="checkbox"/> 통폐합 <input type="checkbox"/> 사업종료 <input type="checkbox"/> 휴업(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없이 1년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용발생일자				
	국민연금	휴업기간		* 탈퇴일	
통폐합시 종수하는 사 업 장		명 칭		사업장기호	
		소 계 지			
건강보험	근로자수		* 탈퇴일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종류	고용보험		주생산품	근로자수
		산재보험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소 멸 일 자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음	

(및 연)

<p>■ 이 신고(신청·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p>	
<p>신고(신청, 통보)인</p>	<p>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p>
<p>신고신청통보서 제출</p>	<p>신고신청통보서 접수 및 확인</p>
<p>수령</p>	<p>신고신청통보서 처리</p>
	<p>사업장 탈퇴보험 관계 소멸 확인 통지</p>
<p>■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p>	
<p>《 구비서류 》</p>	
국민연금	<p>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서 : 근로자 3분씩 2 이상의 통지서 1부,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후·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p>
건강보험	<p>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후·폐업사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p>
고용보험	<p>임의적용사업장 폐지 신청서 근로자 3분씩 2 이상의 통지서 1부,</p>
<p>《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p>	
공통사항	<p>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 표시 하십시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5. 신고(신청)연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 “신고사용”란에는 해당사용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p>
국민연금	<p>1. 사업장이 “ 휴업 ” 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휴수하는 사업장”에서 휴수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건강보험	<p>1. 가입자가 남아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희곡서보수통지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고용보험 산재보험	<p>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 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세면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4. 제출된 시책면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p>

【별지 제108호의2서식】

관리번호	-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과세대상물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납입) 세액산출(과세대상×세율)			
구분	사업소연면적 또는 인원	과세표준액	
		비과세대상	과세대상
재산할	m'	m'	m'
종업원할	인	원	원
구분		납부할 세액	
사업소세	재산할	일금	원정(W)
사업소세	종업원할	일금	원정(W)
계		일금	원정(W)
지방세법 제2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급여대장			

접수증(년 월분 재산할,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서)			
신고법인명		주소	
년 월분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제활용품))

전기사용신청서(I)

고객사항 [계약전액 SK이하]

고객명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200	
전기사용장소			상호공용주택	실명확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Mail	@		휴대전화	- -
소유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계약사항 *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신청구분	공급방식	상 선식	V	계약종별	전력
계약전액	kW	사용용도		공사형태	
요청장구장소	전기사용장소 <input type="checkbox"/>	신청인거주지 <input type="checkbox"/>	미납요금	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원)
요금납부	자동차	은행	지점, 예금주:	계좌번호:	
	인터넷 납부		주민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송전회량	200				
세금분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	종목:	
전주관리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인입전주번호:			
변압기용량	전용: % , 공용: % (공급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선공급 <input type="checkbox"/>)				
사용전 점검기준	한 전 <input type="checkbox"/>	안전공사 점검분을 제외한 전고적		사용전	점수일 (내선외외)
	안전공사 <input type="checkbox"/>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한 전기설비와 안전점검분 중 고적외당 전기설비		점검일정	점검필증 확인일
전기공사 업체명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00
전기사용자 (인) 소 용 자 (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본인은 건축허가서 등 전기사용신청 구비서류[뒷면에 표시]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가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전기 사용자 (인) 소 용 자 (인)

* 위 공서의 내용에 대하여 전기사용(예정)자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의 업무대행자: 전기공사업체명 _____ 성명 (인)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 1주력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고적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요금직용 신청을 하시면 전기요금에 절감됩니다.
- 가구원수가 5인 이상(또는 자녀수 3인이상)인 주거용 고적의 경우 한전에 대가족요금을 신청하시면 월 사용전력량이 300kWh이상시 누진단계가 완화되어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는 한전에 할인요금을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사용전력 등 전기공급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적은 사용하지 않는 월에 한전에 휴지신청 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중에는 전기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동선비를 주거부분과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체결하는 경우의 계약종별은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전력 중에서 고객이 신청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 계약전력 5kWh이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임시전력(을)은 주택용전력(임시전력은 임시전력 갑)으로 계약종별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계약고적이 계약전력을 초과 하여 사용함에 따라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1년중 첫 번째 달에는 취약금 부과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150%를 추가하여 받습니다.
- 전기요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계약종별은 고객님과 한전간에 계약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사용용도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제3장(사이버지점에서 열람가능)에 의하여 적용하며,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맞는 계약종별을 고객님과 한전이 다시 협의결정합니다.

【전기사용신청서 작성요령】

1. 제출서류
 - 전기사용자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소유자 : ① 건축허가서·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중 1종
②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인감증명원(법인인 경우)
※ 한전이 직접열람 가능한 서류 :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2. "신청구분"은 다음 중에 해당되는 하나를 기재합니다.
 - 신규, 증설, 계약합법, 계약분할, 재사용, 공급방식변경증설, 계약종별변경 증설, 공급방식변경
3. "공사형태"는 다음 중에 해당되는 하나를 기재합니다.
 - 인입선 소요공사(1), 외선소요공사(2), 지중인입선 소요공사(5), 지중외선 소요공사(6)
4. "전기공사 업체명"에는 반드시 사용자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 고객사항

고객번호			신청일	200 . . .
고객명	성명(상호)		전기사용장소	
	주민등록번호	-		
계약종별			선택요금	I □, II □, III □
계약권력	전력, 변압기설비 □, 사용설비 □		아파트 계약방법	단일계약 □
전화번호				종합계약 □
소유자	성명(상호)		E-mail	@
	주민등록번호	-		

□ 변경계약사항(해당항목만 작성)

고객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
지불지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폰	
계약종별	전력 → 전력	용도 및 산업분류	
계약권력 결성	변압기설비 □, 사용설비 □	계약권력	전력 → 전력
선택요금	I □, II □, III □	아파트계약방법	단일계약 □, 종합계약 □
계약해지	전력, 전력	일부해지	전력 → 전력
계약휴지	전력, 전력	해지(휴지)후 재사용	전력, 전력
소용량고객 계약종별변경	전력 → 전력 (계약권력 전력 → 전력)		
요금청구장소변경	전기사용장소 □, 신청인거주지 □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임대 : 종목 :		
기타변경사항	계기시험 및 교환(), 계봉인(), 이사경산요금(), 기타()		

귀 회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자체보호장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00 년 월 일

전기사용자 (인) 소 용 자 (인)

□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본인은 건축허가서 등 전기사용 변경신청 구비서류(첨착표시)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가 「전자정부」를 통해 직접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 년 월 일

전기 사용자 (인)
소 용 자 (인)

* 위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전기사용(에너지)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의 임무대행자 : 전기공사업체명 성명 (인)

【제출서류】

신청내용	제출서류	기타서류
5kW이하 명의변경	■ 구비서류 없이 신청가능	
6kW이상 명의변경	<p>소유자명의 신청시 (소유자사용자)</p> <p>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본 중 1종 ② 개인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원 ③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p> <p>사용자명의 신청시 (소유자■사용자)</p> <p>①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본 중 1종 ② 개인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원 ③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p> <p>*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신청시 약관 제73조에 따라 보증료의 필요</p>	○ 필요시 전기요금 영수증
계약해지 (일부해지 포함)	<p>① 건축물대장전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중 1종(소유주 증명서류) ② 개인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원 ③ 사용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p>	○ 필요시 전기요금 영수증
계약종별변경	<p>○ 구비서류 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사용 전력을 기타의 계약종별로 변경할 경우에는 '내선설비검점표' EH는 '내선설비 불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종별 결정을 위한 참고서류(사업자등록증 등)</p>	○ 필요시 전기요금 영수증
기타변경사항	○ '명의변경'에 준하여 처리하되 고객간 권리의무관계의 중요성과 고객특성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한전이 직접 열람가능한 서류 :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